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7918
----------	------

제안연월일 : 2007. 11. 2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년 12월 11일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2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7년 4월 18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7년 6월 20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7년 6월 21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2007년 6월 29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최용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9)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함에도 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수입금 등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경우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적용받고 있어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이 지난 십수년간 택시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오히려 장기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음.

이에 헌법에 의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법률로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체계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자 택시노동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현행 최저임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택시근로자의 경우는 생산고에 의한 임금지급제 등 임금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6조제5항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6條(最低賃金の效力) ① ~ ④ (생략) <u><신설></u></p> <p>⑤ ~ ⑧ (생략)</p>	<p>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p> <p>⑥ ~ ⑨ (현행 ⑤ ~ ⑧항과 같음)</p>